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임헌호 의원 발의】



2025. 8. 26.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67호로 2025년 8월 14일 임헌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의 지역적 특성과 구민의 다양한 치안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예방,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 책무 (안 제3조)
- 다.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
- 라. 지원사업 범위 (안 제6조)
- 마.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2025.8.14.~2025.8.21.)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 2021년 1월 1일자로 기존 국가경찰 중심의 체계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으며, 개정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어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운영됨.
- 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하되 경찰공무원은 국가직으로 두고 사무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여 자치경찰 사무 수행 인력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등 주민 밀착형 치안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 해당 사무 수행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협력·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구(區) 실정에 맞게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고 치안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계획,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아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제 명	내 용
제1조	목적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제2조	정의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경찰법과 일치되도록 규정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 제외 본 조례 따름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매년 세부계획 수립·시행
제6조	지원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 지원 가능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영등포경찰서, 구의회, 남부교육지원청, 영등포소방서 등과 협력체계 구축

- 본 조례안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안 제2조)를 「경찰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대로 명시하였으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들(안 제6조) 또한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그 밖에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써 상위법에서 규정한 자치경찰 사무와의 연계성을 가짐.

○ 종합의견

- 자치경찰제도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실제 치안 수요의 상당 부분은 기초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함.
- 특히 생활안전, 여성·아동 보호, 지역 교통안전 등은 자치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및 보완할 여지가 크므로 본 조례는 광역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 정책을 시행하고 주민 체감형 범죄예방, 교통안전, 취약계층 보호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법적인 기반이 될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참 고 자 료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2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
2.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절한 규모로 정할 것
3.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4.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효율적인 것으로 정할 것